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의 변화와 의의*

이 우 철**

I. 서론

최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부분이 현대사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면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5월 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일반법적지위를 누리던 1995년의 정보보호지침 95/46/EC의 개정안으로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¹⁾)을 관보에 공표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동 규칙은 2018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발표된 법령은 2012년 1월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일반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여 2015년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3자간 개정안의 합의도출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존의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인 1995년의 정보보호지침이 그 목적과 원칙에 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형식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 지침(Directive)의 형태로 지속돼 왔고 이 지침이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존재해 왔지만 정보보호법제에 있어 구체적인 면에서는 각 회원국별로 상이한 법률체도를 가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마련된 개정안은 기존의 지침의 성격이 아닌

* 투고일자 : 2018. 12. 17. 심사일자 : 2018. 12. 26. 게재확정일자 : 2018. 12. 27.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1)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공포되어 모든 회원국가가 자국의 입법절차를 보충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 없이 각 회원국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조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럽연합전체의 집행에 있어 규율규범의 단일화와 통합에 따른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려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2018년 5월 발효된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 규칙에 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전 지침에 비해 개인정보통제의 강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강화의 내용을 부문별로 고찰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럽연합의 GDPR제정 배경 및 경과

1. 배경

정보화 사회의 발전 및 고도화로 인해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되고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클라우드 컴퓨팅·원격교육·IT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있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보화 기술의 편의성의 뒷면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의 사례가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정보의 유출은 민간의 영역뿐만 아니라 2013년 미국에서 발생한 스노든 사건의 예처럼 공공부분이 개인 기업 관련 정보를 감청·감시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이 사건의 여파로 EU가 미국에 일정한 특혜를 주었던 미국 상무부와 EU 집행위원회사이에 맺어진 개인 정보공유에 관한 협정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Agreement)협정이 폐지되었다²⁾. 그동안 이 협정을 통해 미국의 IT기업인 페이스북,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등이 개별 유럽국가의 정책과 관련 없이 유럽시민의 급여와 연락처 등 EU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내로 이전과 전송을 하여 자국 기업들의 정책 활용을 하였으나, 동 협정의 무효에 따라 유럽시민들의 개인정보의 자의적

2) 유럽사법재판소가 2015년 10월 6일 세이프 하버 협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법원은 미국 주요 기업들이 세이프 하버 협정을 근거로 유럽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미국으로 전송하면서도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17/15, Luxembourg, 6 October 2015.

전송과 수집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토대로 사업을 영위한 미국 내 4,000여 이상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있어 인권 의식의 성장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의 인식이 진전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들의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괄법의 규정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1995년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일반적 지위를 가진 정보보호지침 95/46/EC³⁾을 두었으며, 2016년 5월 상기 지침의 개정안으로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규칙을 공포하고 2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발효함으로써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며 유럽연합 전체 회원 국가를 구속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의 별도의 입법적 수용절차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보제공자의 열람권·잊혀질 권리·프로파일링 거부권·개인정보 이동권 등 개인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지의무·미성년자의 보호·정보관리자 임명·가명화와 같은 비식별조치 등 정보 수집 및 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다.

2. 제정 경과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의 유통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측면을 양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5년 정보보호지침을 통해 각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나섰지만 각 회원국 간의 통일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 안의 여러 기관이 관여하여 GDPR을 제정하게 되는데 유럽연합의 입법의 특성상 상당한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된다. 이 제정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개선되어진 정보보호규정의 입안⁴⁾이 있게 된다. 이는 개인적 정보동의를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된다. 유럽의회는 2013년 1월 유럽집행부의 안을 개정한 안을 제출하였으며, 2014년 3월 12일 제1독회에서 자신들의 안⁵⁾을 승인하였다. 유럽이

3)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L 281, 23.11.1995, p. 31).

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 11 final - 2012/011 (COD), 2012.1. 25.

5)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2 March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사회(European Council)도 2013년 5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 6월 15일 일반적 합의(the general approach)라고 알려진 제1독회에서 자신들의 안을 승인하였고,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 알려진 3자 회담(Trilogue⁶⁾)에 이 규정을 넘어가도록 승인하였다. 2015년 6월부터 여러 차례의 3자 회담의 논의를 거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15년 12월 15일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2016년 1월 공식 서명된 것이 최종 원문이 되었다. 이후 2016년 4월 8일 유럽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동월 16일에 유럽의회에 의해 승인되게 된다. 그리고 5월 유럽연합의 관보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었으며 2년 여 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8년 5월 유럽연합전체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⁷⁾.

III. GDPR의 주요규정내용

2016년 유럽연합일반정보보호규칙은 전11장 99개조로 규정되어 있어 종래 1995년 지침의 전 7장 34개조의 구성에서 새로운 규정의 신설과 보완으로 대폭 변경되었으며, 특히 그 규정 형식이 지침(Directive)에서 규칙(Regulation)으로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상대방인 회원국만을 구속하고 결과의 달성만을 구속하는 지침보다 규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부분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규칙은 EU 전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법형식으로 일단 발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고 비준과 같은 회원국의 국내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 규칙은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강화방안으로 법적효력 및 파급효과가 더욱 더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2012)0011 - C7-0025/2012 - 2012/0011(COD))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first reading).

6) Formal trilogue meeting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입법과정에서 사용되어진 회의의 형태이다. 문학의 3부작이라는 명칭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유럽위원회의 세 기구의 대화를 의미한다.

7) GDPR의 Timeline of Events에 관한 사항은 EU GDPR 홈페이지 참조(<https://eugdpr.org/the-process/timeline-of-events/>)

1. GDPR의 구성 및 특징

1) 구성

2016년 5월 24일 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규칙은 총 173개, 본문이 총 99조로 이루어진 법전⁸⁾으로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 제2장은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제3장은 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은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제5장은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의 이전, 제6장은 독립적인 감독기구, 제7장은 협력 및 일관성, 제8장은 권리구제, 책임 및 제재, 제9장은 특정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장은 위임법률 및 시행법률, 제11장은 최종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⁹⁾.

2) 특징

GDPR의 목표는 오늘날의 데이터 중심 세계에서 모든 EU 시민을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유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핵심 원칙은 이전 지침에도 여전히 적용되지만 규제 정책에 많은 변경 사항이 제안되었으며¹⁰⁾, GDPR의 주요 특징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영토적 관할권의 확대, 제재의 강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보안 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영토적 관할권의 확대는 정보처리자가 EU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처리가 EU 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U의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¹¹⁾에 한하여 동 규정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¹²⁾

둘째로는 제재의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정 위반의 경우 경중에 따라 ① 10,000,000유로까지 또는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세계 연간전체매출액의 2%까지 중에서 또는 ② 20,000,000유로 또는 이전 회계연도의

8) 차상욱,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4. 30, 151면.
 9) 오태현·강민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5. 25. 5면.
 10) GDPR에 관한 주요한 특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EU GDPR 홈페이지 참조(<https://eugdpr.org/the-regulation/>).
 11) EU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EU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주체의 EU역내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류승균,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제정과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1호, 2016. 5, 266면.

세계연간매출액의 4%까지 중 높은 쪽의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83조 제5항).

셋째로는 개인정보의 EU 역내의 이전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EU 역외로의 이전은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인데 개인정보의 EU 역외로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제3국이 적정성 평가 승인을 획득한 경우(제45조)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기업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넷째로는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강화로서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응하여 이전의 EU지침(Directive 95/46/EC)에는 없었던 삭제권(잊혀질 권리), 처리제한권,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보안조치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적으로 GDPR의 규정을 적용 및 준수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즉,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발생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제33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34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처리 유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개인정보영향 평가¹³⁾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35조).

2.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

본 규정은 개인적 정보¹⁴⁾의 처리에 있어 자연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개인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을 입법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개인적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인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제1조)¹⁵⁾. 개인의 정보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

13) 개인정보영향평가는 ①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하여 자연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 ② 민감정보, 유죄판결, 형사범죄에 대한 대규모 처리의 경우 ③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요구된다.

14) 본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적 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데이터 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가능한 자연인은 이름, 식별번호, 위치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또는 신체적, 심리학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 등 특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GDPR Article 1 This Regulation lays down ru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rules relating to the free movement of personal data.

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 제8조 1항과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6조 1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한 개인적 정보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안에서 개인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의 정보처리와 관련된 자연인의 보호라는 이유로 제한되어질 수도 없고 금지되어 질수 도 없다(제1조 3항)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EU역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GDPR은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신념, 노동조합 가입여부, 유전정보, 건강관련 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 등의 민감한 정보를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로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원칙적 동의가 없이는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제9조 제1항).

3. 동의(Consent)

GDPR하에서 개인적 정보의 처리에 있어 법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정보주체자의 동의이며, 또한 특수한 범주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유효하게 획득되어진 동의가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되겠지만, 유효한 동의를 얻기 위한 요구조건은 GDPR하에서 보다 강화되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동 규칙의 제7조에서도 동의의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듯이 동의는 자유롭게 주어져야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보가 안내되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동의에 대한 요청은 명백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며, 둘째로 동의요청은 다른 문제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여러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동의는 각각의 목적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셋째로 개인들이 진정한 자유선택권이 없거나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할 때 손실이 발생한다면 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넷째로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야 하며 철회가 쉬워야 하고, 개인들에게는 동의가 주어질 때 그것을 철회할 수 권리가 있음이 안내되어져야만 한다.

4. 정보주체자의 권리(Rights of data subjects)

GDPR은 정보주체자의 권리를 1995년 지침에 비해 강화하고 확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정보의 투명성, 연락 및 형식을 규정하였으며(제12조), 개인정보 이동권, 삭제권, 프로파일링 같은 몇 가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고 기존의 지침에 있었던 권리들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잊혀질 권리와 같은 논란이

되었던 권리의 내용들을 성문화하였다.¹⁶⁾ 이러한 측면에서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제3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13조, 제14조의 정보를 고지 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제15조 정보주체의 열람권(Right of access by the data subject), 제16조 정정권(Right to rectification), 제17조 삭제권: 잊혀질 권리(Right to erasure ; right to be forgotten), 제18조 처리에 대한 제한권(Right to restriction of processing),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제21조의 거부권(Right to object), 제22조의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인의 의사결정 권리(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를 규정하고 있다.

(1)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보주체자의 열람권은 정보의 주체가 데이터 컨트롤러¹⁷⁾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사본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요구가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권한은 개인 정보가 수집 된 곳과 처리 방법과 같은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권리는 1995년 지침에서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기업들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부담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¹⁸⁾.

(2) 정정권

정보주체가 부당한 지연없이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컨트롤러에게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처리 목적에 따라 정보주체는 불완전한 개인정보를 완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16)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9, 417면

17) 컨트롤러(Controller)는 개인정보의 처리의 수단과 목적을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자연인, 법인, 공공단체, 기관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 처리의 결정은 컨트롤러 단독으로 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의 목적과 수단이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컨트롤러의 지명을 위한 특정 기준은 연방 또는 회원국 법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다(GDPR 제4조 제7항).

18) Allen & Overy, Preparing for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January 2018, p20.

(3) 삭제권(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라고도 불리는 삭제권은 정보주체가 부당한 지체 없이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2012년 유럽위원회의 규칙에서 잊혀질 권리가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되었으나, 2016년 규칙은 삭제권을 규정한 조문에서 잊혀질 권리를 병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¹⁹⁾ 2012년 규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삭제와 더 이상의 배포금지를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2016년 규칙은 삭제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⁰⁾.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인 Google 스페인사건²¹⁾²²⁾의 경우 스페인 법원이 1995년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구하여 제청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²³⁾, 스페인 거주자 이름이 나열된 Google 검색엔진 결과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의 사실 등의 표시에 대해 구글은 특정 신문 기사의 링크를 제거해야만 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원래의 수집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된 경우,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하여 삭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삭제권을 인정하고 있다.²⁴⁾

하지만, 동조의 권리에 따라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컨트롤러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져서 목적과 관련하여 여전히 필요한 경우나 철회의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는 계속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중 보건 분야에서처럼 공공의 이익과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에 있어 잊혀질 권리가 관련 목적의 성취를 불가능하게하거나 심각하게 저해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면제가 주어지는데 이런 면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회원 국가가 피해 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19) Article 17 Right to erasure ('right to be forgotten')

20) 함인선, 앞의 논문, 417-418면.

21)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Mario Costeja González(2014).

22) 동 판결은 스페인 법원이 1995년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단을 구하여 제청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23) 함인선, EU개인정보관례,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271-273면 참조.

24) 오테현·강민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5. 25. 6면.

(4) 처리제한권

처리제한권은 1995년 지침과 2012년 규칙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권리를 2016년 규정에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동 조항은 특정상황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개인정보의 정확성이 다뤄지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소송 수행을 위하여 개인 정보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가 임시로 컨트롤러에게 개인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삭제를 보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한 기간 동안 개인 정보는 저장을 제외하고는 동의 또는 다른 특정 상황에서만 처리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된 경우에도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법적 청구권의 입증이나 행사, 방어를 위한 경우 ③ 제3의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우 ④ EU 또는 회원국의 주요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컨트롤러가 개인정보 처리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정보이동 요구권

정보주체는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본인들과 관련된 개인적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 정보는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어 지며, 기계가 인식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정보를 제공되어져 왔던 컨트롤러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컨트롤러에게 자기정보의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제20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정보 이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를 컨트롤러들 간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정보 이동권은 제17조의 삭제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의 이익이나 공식적인 권한의 실행에 수행되어진 업무의 처리에 있어 필수적으로 행해진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거부권

GDPR은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보장하고 반대권의 내용의 고지와 명시적 강조를 규정하며,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 특히 다음의 세 가지의 경우에 정보주체의 반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첫째, 정보

주체들은 자신들의 특정한 상태에 관련하여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통해 개인별 특정행동이나 수행능력, 선호도 등 직접적인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프로파일링²⁵⁾ 포함)을 거부할 수 있고, 둘째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 또는 공익적 임무수행 및 직무권한 행사에 근거한 개인의 정보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과학적·역사적 연구 및 통계 목적의 처리에 있어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정보주체와 정보컨트롤러 사이의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U나 회원국 법률에 의해 인가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정보의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인종·종교·건강 등 특별히 분류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유럽연합 개인정보의 제3국이나 국제조직으로의 이전

(1) 유럽연합의 1995년 지침이나 2016년 규칙 모두 개인의 정보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언급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처리와 관련한 개인들의 보호와 개인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유럽연합 역내에 한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고 있으나 개인 정보의 EU역외인 제3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1995년 지침에 비하여 2016년 규정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2) 규정내용

① 제44조에서는 이전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for transfers)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② 제45조은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이동(Transfers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으로 제3국이나 국제조직으로의 정보의 이전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3국이나 국제조직이 적합한 보호수준을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은 어떠한 특별한 허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제46조은 적절한 안전장치의 제공에 따른 이전(Transfers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

25) 동 규정 4조의 4 프로파일링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모든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직장에서의 개인의 수행 능력, 경제 상황, 건강, 개인 선호, 관심사, 신뢰성, 행동, 위치 또는 움직임 등을 예측하거나 분석하여 개인의 어떠한 측면을 평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방식이다.

26) 함인선, 앞의 논문, 423면.

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 정보의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한 경우나 정보대상자의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제3국이나 국제조직으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④ 제47조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s)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찰감독기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고용인을 포함한 공동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그들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시행 가능한 권리들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구속적 기업규칙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⑤ 제48조에서는 유럽연합법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전과 공개(Transfers or disclosures not authorised by Union law)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의 공개나 이전을 필요로 하는 제3국의 법원이나 재판소의 판결 및 행정 당국의 어떠한 판단이 이를 요청하는 제3국과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간에 상호법적원조조약과 같은 국제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이 장에 따른 다른 이전의 사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식되거나 강제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제49조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위한 법의 부분적 개폐나 수정(Derogations for specific situation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에 있어 예외²⁷⁾를 규정하고 있다. ⑦ 제50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유럽연합 시민들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은 제3국이 EU와 상응하는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제3국에 대해 적정성 평가²⁸⁾를 실시하며 보호체계가 높다고 인정된 국가에 한해서만 정보의 EU역외 이전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제3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4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여 EU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27)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정보이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① 정보주체가 적정성 결정 및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 받은 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② 정보주체와 컨트롤러사이의 계약을 이행을 위한 이전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행해진 이전 계약수단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이전 ③ 공익의 중요한 이유에 의한 이전이 필수적인 경우 ④ 법적 권리의 확립, 실행, 수호를 위해 정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정보주체나 다른 사람의 결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이다.

28) 2018년 5월 기준으로 EU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승인받은 국가는 모두 12개국으로 안도라, 아르헨티나, 캐나다(사업기관에 한정하여 부분 승인), 페로 제도, 건지, 맨 섬, 이스라엘, 저지, 뉴질랜드, 스위스, 우루과이, 미국(Privacy Shield에 제한)이다.

국가로의 정보이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EU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제3국의 기업들은 EU의 행동강령, 기업규칙, 관련증서 획득, 집행위원회 또는 관련당국으로부터 승인된 표준계약 등 개인정보보호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6. 개인정보처리의 엄격화

기업은 정보제공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개인정보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의 처리유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에 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²⁹⁾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컨트롤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영향평가에는 위험을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며, GDPR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보안조치 및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IV. 시사점

1. GDPR 시행의 의미

GDPR(Regulation2016/679)이 2016년 5월 4일 유럽연합 관보에 공포되었고, 실질적인 효력의 발효는 준비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2018년 5월 25일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일반법적 지위를 누리던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게 된다. 즉, GDPR이 효력이 발생하게

29) GDPR규정 제35조 제3항(Article 35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의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 된 처리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평가로, 해당평가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효력을 미치는 경우 ② 민감정보 또는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 정보에 대한 대규모 처리를 하는 경우 ③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있다.

되면서 기존의 정보보호지침인 Directive 95/46/EC는 폐지되게 되고 새로운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각 회원 국가들은 기존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던 회원 국가별 정보보호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1995년 지침(Directive)은 달성되어야 할 결과에 대해 상대방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방식 및 수단의 선택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위임된 반면, 2016년 GDPR은 규정(Regulation)³⁰⁾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유럽연합 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적용된다는 점에서 EU국가 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일성을 기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 규정제정의 배경에서도 언급되듯이 1995년의 지침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범형식이 지침이라는 점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EU집행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단일화 요구와 불확실성 제거의 요구가 존재하였고, 동 규정의 시행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통일적인 EU의 개인정보보호를 시행하게 되어 EU역내시장에서는 디지털 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이나 공적 기관들에서는 법적·실무적 확실성³¹⁾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³²⁾.

2. 개인정보보호의 활용과 균형

유럽연합의 GDPR은 개인의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이동과 같은 활용적인 측면이 법률적 취지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동 규정의 제1조의 일반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자연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³³⁾.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30) 유럽연합의 입법에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칙, 지침, 결정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의견이 있다. 규칙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부나 민간 활동을 규제하며, 지침은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건으로 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자국법을 제정·개정할 수 있으며, 결정은 적용대상을 특정 국가, 기업, 개인에게 한정하고 있다.

31)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익명화 정보(Anonymized Data)는 좀 지침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고, 가명 처리된 정보(Pseudonymized Data)는 과학적 연구, 역사연구,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지만 지침의 성격상 구체적 처리기준은 회원국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회원국전체에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가명정보를 명문화하였다.

32) 이준복, GDPR시대에서 일본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5권, 2018. 10. 105-106면.

33) GDPR Article 1 Subject-matter and objectives

1. This Regulation lays down ru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rules relating to the free movement of personal data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³⁴⁾ 개인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는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점 더 활성화된다고 보면 개인정보도 정보재라는 하나의 재화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라는 측면을 뛰어 넘어 자유로운 유통의 대상임도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GDPR 제6조 4항의 규정에서처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가명처리·암호화처리 등의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이를 허용하고 있음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GDPR의 목표는 개인정보 및 정보유출로부터 유럽연합 시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핵심원칙은 이전 지침에도 여전히 적용되지만 규제정책에 있어 많은 변경사항들이 제안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³⁵⁾. 그 몇 가지 사항 중 하나가 개인정보노출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위반 통지(breach notification)를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위반 통지가 의무화 되고 위반사항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처리자는 정보위반을 처음 알게 된 후 ‘과도한 지연없이(without undue delay)’ 그들의 고객이나 컨트롤러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함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의 규칙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로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확대하고 있고, 이전의 규칙에는 없었던 잊혀질 권리, 처리제한권, 개인정보 이전권이 새롭게 도입되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프로파일링을 포함하여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위의 권리들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권리이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열람권, 정정권은 국내의 입법에서도 유사하게 보호하고 있는 권리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권리들은 전자에 규정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34)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35) GDPR에 관한 주요한 변화에 관한 사항은 EU GDPR 홈페이지 참조. <https://eugdpr.org/the-regulation/>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정보주체가 컨트롤러로부터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주체의 권리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의 사본을 전기적 형태의 방식으로 무료로 배부하게 함으로서 정보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고 개인정보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삭제권이라고도 불리는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정보컨트롤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정보의 전파를 금지하고 있으며 잠정적인 제3자가 정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오·남용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제권한을 개인에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들 수 있다. 동 규정 제17조 1항에 명시된 삭제의 조건처럼 더 이상 원래의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의 정보이거나 정보의 처리에 있어 개인의 동의가 철회되었을 때, 동 규정 제21조의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도 정보주체가 반대할 경우 삭제를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입법화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의 위반에 대해 벌칙이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기업 및 정보처리자들에게 실효성까지 담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잊혀질 권리를 통해 정보처리자들에게 정보주체자의 권리와 정보의 이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동 규정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동권은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권한과 다른 컨트롤러에게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과 같은 IoE시대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즉, 정보주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의 재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정보의 처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개인정보의 이전권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 확대를 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있어 그 권리를 개인에게 인정하고자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6)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6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4, 138면.

4. 제재의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의 감독당국도 GDPR의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해 법규를 제정해야 하며, 행정적 제재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2016년 규칙은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의 규정은 회원국별로 법률이 다른 관계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각 회원국이 사법제재를 규정하여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직접적인 벌칙을 규정할 수 있고 이의 반영조치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 제재로 각 개별사건에 관해 과징금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과징금의 액수는 개인정보처리의 성격, 범위 또는 목적을 고려한 위반의 성격, 중대성 및 기간, 손해의 정도, 고의·과실, 컨트롤러와 프로세서가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해 GDPR의 일반적인 위반의 경우 10,000,000유로 또는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세계연간전체매출액의 2%까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는 20,000,000유로 또는 이전 회계연도의 세계연간매출액의 4%까지 중 높은 쪽의 과징금이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한 노력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인권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 회원국별 벌칙규정을 통한 통제의 강화가 촉진되어 질 수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나 정보보호담당관의 지정 등 외적인 시스템에다 덧붙여 내부적으로는 행정적 성격의 막중한 과징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U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 감독당국의 통제권의 실효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4년의 준비기간과 토론을 거쳐 2016년 유럽연합 의회에 의해 승인되고 2018년 5월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GDPR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임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인정보의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형성되게 될 것이고 향후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처리하는데 있어 다양한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정책들이 명백하고 쉬운 언어로 기재되고,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동의가 필수조건이 될 것이고, 기업이나 개인정보 사용자들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 더욱 투명성을 가지게 되고, 정보주체들이

더 강력해진 권리를 동 규정을 통해 획득하게 되었다. 잊혀질 권리, 자동화된 정보처리에 있어서 프로파일링의 거부권, 개인정보의 이전권, EU역외로의 개인정보이전,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의 규정을 통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결정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부분에서는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듯 유럽연합의 개인정보규정의 변화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교역의 대상인 기업이나 공공조직을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든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처리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 되어 질 것이다.

참 고 자 료

<국내문헌>

- 함인선, EU개인정보관례,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 류승균, EU 개인정보보호규칙의 제정과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1호, 2016.
- 오태현·강민지,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평가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이준복, GDPR시대에서 일본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5권, 2018.
- 조수영,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6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 차상욱,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 4
- 함인선,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의 제정과 그 시사점,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국외문헌>

- Allen & Overy, Preparing for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January 2018.
- Christina Tikkinen-piri, Anna Rohuen, Jouni Markkula,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hangess and implications for personal data collecting companie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34, 2018.

<인터넷 홈페이지>

- EU GDPR <https://eugdpr.org/>
- 2018 reform of EU data protection rul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data-protection/2018-reform-eu-data-protection-rules_en